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세무담당부서(장)
제목 2026년 주요 법령 개정·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1223호(2025.12.23.), 제21308호(2025.12.31.) 및 대통령령 제36003호(2025.12.31.)로 일부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www.scra.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개정·시행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www.moleg.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법령 개정내용

법 령	주요 내용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u>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 적용 2026.06.30.까지 연장(6개월)</u>
	* 시행일 : 2026.01.01.부터 시행
② 지방세법	<u>자동차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액 계산법 조정(제128조 제3항 및 4항)</u>
	* 시행일 : 2026.01.0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u>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3년)</u>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한도설정 :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 시행일 1) 공제기간 연장 : 2026.01.01.부터 시행 2) 공제금액 한도설정 : 2026.07.01.부터 시행

※ 납부의무자의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금액 계산식 조정

-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 연세액 공제율 예시

1월에 연세액 납부시 공제율 계산 : $334\text{일} / 365\text{일} \times 5\% = 4.57\%$

-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제2기분의 세액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6월 16일부터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붙임 : 2026년 주요법령 개정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수신자 회원사 216개사

사업파트	주임 이가영	책임 박종우	실장 김진석	전무 최재현	이사장 박성호
------	-----------	-----------	-----------	-----------	------------

시행 서자대조 26- 0003 (2026.01.05.) 접수 - ()
 우 06664 서울 서초구 방배로22길 18, 4층 (방배동, 카렌탈비즈니스센터) / www.scra.or.kr
 전화 (02) 525-9082 전송 (02) 525-9063/ 이메일 pjw@scra.or.kr / 공개

[붙임]

2026년 주요법령 개정 안내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5355호, 2025.02.28.>
-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을 '26.06.30.까지 적용 연장

<신·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부칙 <제35355호, 2025.02.28.>	부칙 <제35355호, 2025.02.28.>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 ----- <u>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u> ②·③ 생략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 ----- <u>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u> ②·③ 생략

② 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액 계산법 조정(제128조 제3항 및 4항)

<신·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액 신고납부기간</th><th>계 산 식</th></tr> </thead> <tbody> <tr> <td>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d rowspan="3">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td></tr> <tr> <td>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td></tr> <tr> <td>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body> </table>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 ----- ----- ----- <u>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u> ----- -----.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액 신고납부기간</th><th>계 산 식</th></tr> </thead> <tbody> <tr> <td>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d rowspan="2">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td></tr> <tr> <td>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body> </table>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계 산 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

-----.

-----.

계 산 식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3년)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한도설정

: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① ----- ----- ----- ----- 2028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

